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24. 11. 8. ~ 11.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07.61.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24년 7월 30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또는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하이난 이성 (Hainan Yisheng Petrochemical Co., Ltd.) 나. 이성 다후와 (Yisheng Dahua Petrochemical Co., Ltd.) 다. 하이난 이성 무역 (Hainan Yisheng Trading Co., Ltd.) 라. 하이난 형룽 무역 (Hainan Hengrong Trading Co., Ltd.)	7.00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또는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씨알씨 (China Resource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나. 주하이 씨알씨 (Zhuhai China Resource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다. 씨알씨 뉴 머티리얼 (China Resources Chemicals New Material Company Limited)	7.98
	3. 그 밖의 공급자	7.98

비고: 제3호의 공급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 및 제2호까지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